#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김희정·서일준·박성민

백종헌 • 박준태 • 김승수

김태호 • 이인선 • 임이자

서지영 · 김은혜 · 곽규택

강승규 · 정성국 · 송석준

이철규 • 구자근 • 강대식

정연욱 • 박정하 • 이성권

최수진 · 권영진 의원

(23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보다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또한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이하 "아이맞이 아빠휴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는 3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6일"로, "최초 1일"을 "최초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청구하였는데도"를 "사용하려는 때에"로 한다.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아이맞이 아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아이맞이 아빠휴가의 기간은 20일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 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아이맞이 아빠휴가제"로 한다.
  -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워)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 ----아이맞이 아빠휴가, 제18 기준법 : 제74조에 따른 출산 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 ----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 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3제1항 본문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아이맞이 아빠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20일의 휴가(이하 "아이맞이 아빠휴가"라 한다)를-----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② (생략)
- ③ <u>배우자 출산휴가</u>는 근로자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④ <u>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u>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 ⑤ 사업주는 <u>배우자 출산휴가</u>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 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 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 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맞이 아빠휴가
④ <u>아이맞이 아빠휴가는 3회</u>
⑤ <u>아이맞이 아빠휴</u> 가
<u>/</u>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110年月3(1日月7日 17) (1)
연간
<u> </u>
<u> </u>
· 
-

# ② (생 략)<신 설>

### ③ (생략)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 (1년 한다. <u><단서 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
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
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u></u> 용세
2)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
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
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하느 그리자이 겨우 9개위 이

#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한다.

### ⑤ ~ ⑦ (생 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 저의 조치) ① 사업주는 <u>만 8세</u> 이

내에서 수가도 사용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u>12세 이</u>
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u>(이하 "육아기"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4
 로자
기간의 두 배를
· ⑤ ~ ⑦ (현행과 같음)
세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
의 조치) ① 8세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② (생 략)
-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 ② <u>국가는</u> 소속 근로자의 일·가 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 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제37조(벌칙) ① (생 략)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u>배우자 출산휴가</u>를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 ~ 9. (생략)
- ③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아이맞이 아빠휴가</u>
3. ~ 9.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 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9. (생략)

④·⑤ (생 략)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삭 제> 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 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 용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하려는 때
<u>에</u>
   2이2 ∼ Q (お해고 가으)

3의2. ∼ 9. (현행과 샅음)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